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촉구〉

■ 위성곤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제2207214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 문	3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등 58인

2. 제 안 일 : 2025. 1. 2.

3. 회 부 일 : 2025. 1. 3.

※ 의안번호 : 7214

II.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한 군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발포 명령을 내리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우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함.

이에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24년 12월 14일 의결하였음.

내란 수괴 혐의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12.3 내란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연일 추락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탄핵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만이 경제의 불

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인지하고 있는 대목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17일 국회에 나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빨리 해소되는 것이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선출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헌법재판관 1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2차 심의한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월권이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임.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에 인선권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은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함.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로 보아

야 함.

더욱이 2025년 4월 18일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막아낸 지금의 상황을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 동조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 회복 및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Ⅲ.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V. 검토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024년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재판관 3인(이종석·김기영·이영진)은 국회에서 선출(2018. 10. 17)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국회는 재판관의 궐원에 따른 후임 재판관 선출을 위하여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2인(조한창·정계선)만을 임명하였음.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로 보아 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취지임.

문 의 처
02)6788-5014